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일, 임미애의원 등 2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14.)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미애의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2016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75,0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¹⁾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1의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자격 규정과 내부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u>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u>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023년 2월부터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교육·체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체결한 MOU에서 정하는 내용을 토대로 계절근로자 선발, 송출,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므로, 근로자의 모집·송출·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여권 압수 등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인원 배정상 불이익 외에 제재조치가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³⁾

2) **법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동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2025.1.21.)

반면,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경우 도입 당시 외국인력 규모는 79,000명⁴⁾으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와 유사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절차, 근로계약, 건강보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 상세 규정을 두고 도입이 이루어진 바 있음.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	2004년	2015년
근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
내용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도운영 (인력도입)	고용부(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지자체)
농업분야 도입업종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음식점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작물재배업, 어업 * 계절성으로 인한 단기 노동력 필요 분야
체류자격 /체류기간	E-9(비전문취업)/3년(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대 9년 8개월 근로 가능(4년 10개월 +4년 10개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E-8(계절근로)/8개월 이내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D-1(문화예술), D-2(유학),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등 총 9개 체류자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30.)

둘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프로그램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운영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2024년 기준 165,000명(제조업 95,000명, 조선업 5,000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3,000명, 농축산업 16,000명, 어업 10,000명)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무총리에 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에서의 노동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 중앙행정기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24. 11. 5).⁵⁾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농어촌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에서는 계절근로제 법제화와 관련하여 ①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②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두며, ③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서는 계절근로제의 특성에 맞는 제도운영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관련 내용은 <참고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고용허가제에서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반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대 8개월까지 단기체류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절근로자의 심사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할 경우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및 지자체의 적시 인력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의 차이점]

제도	계절근로제	고용허가제
근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운영방식 △도입신청·배정 요건 및 절차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음식점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제도운영 (인력도입)	법무부(지자체)	고용부(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분야 도입업종	△작물재배업 * 계절성으로 인한 단기 노동력 필요 분야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도입대상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②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아내의 친척으로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계절근로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농축산업 송출지정 국가*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시험 및 건강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자 * 12개국: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체류자격 /체류기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E-8(계절근로)/8개월 이내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D-1(문화예술), D-2(유학), D-4(아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등 총 9개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3년(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대 9년 8개월 근로 가능(4년 10개월 +4년 10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30.)

또한,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인척 초청 방식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함.

MOU 방식보다는 친인척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낮아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점(2023년말 기준 MOU외 방식 64%)을 고려할 때, 동 방식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도의 주무부처 이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농업분야 내·외국인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속도에 비해 내국인 인력 공급은 정체 상태로 장기적으로 외국 인력 공급이 농어촌 인력 공급 정책의 주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내·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식품부 및 해수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와 같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법령을 통해 외국인력의 고용범위 및 고용절차 등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음.⁶⁾

반면, 현재 법무부 지침과 지자체의 MOU에 따라 계절근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를 법무부(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및 제도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6)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및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해수부 고시)」

참고로, '25년 5월 기준 전국 106개 기초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였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되므로 농어업고용인력의 통합적인 관리에는 법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계 부처간 협의를 비롯하여 이관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과 개정안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을 살펴보면, 인력도입 방식, 계절근로자 관리 주체 등에서 권한 배분 방식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계절근로제 운영 체계]

구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주체	제도운영-농식품부, 해수부장관	제도시행-법무부장관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배정심사위원회 -계절근로 기본계획, 업종 및 도입규모 결정	법무부 소속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계절근로 기본계획, 업종 및 도입규모 등 자문
인력도입	농식품부, 해수부와 송출국 정부 협의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MOU
계절근로자 선발·관리	농식품부 및 해수부장관	법무부장관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자료: 의안원문 재구성

따라서 두 법률안 간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관련 부분을 조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장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규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중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 계절근로기간 연장, 재입국추천 및 근무처 변경을 삭제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삭제).
- 나.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함(안 제7조의2 삭제).
-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를 위

한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체결, 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원칙,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조치 의무 등은 제4장(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함(안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 및 제10조의12 삭제, 안 제14조의2 신설).

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시 지정 요건은 법률에서 그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지정취소 사유 및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를 “농어업 분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5호 중 “인권침해 구제”를 “인권보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6호 중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 등 실태를”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실태를”로 한다.

안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계절근로자”를 “농어업고용인력”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절근로자”를 “농어업고용인력”으로 한다.

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10까지 및 안 제10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0조의11을 안 제10조의2로 하고, 안 제10조의2의 제목 “(공공형 계절근로자업장의 지정)”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등은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 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를 “조례나 규칙으로”로, “관련”을 “그 일부를 관련”으로 한다.

안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외국인 계절근로자</u> ”란 「 <u>출입국관리법</u> 」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u>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u>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 ----- ----- ----- <u>농어</u> <u>업 분야</u> ----- ----- ----- -----.
제5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제5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제5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관은 농어업고용인 력의 육성과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 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 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농어업고용인력 의 <u>근무환경 개선</u>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 -- <u>근무환경 개선</u> , <u>인권침해 구제</u> -- ----- -----	5. ----- ----- <u>인권보호</u> -----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6.·7. (개정안과 같 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개정안과 같음)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현행 과 같음)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개정 안과 같음)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4. (생략) 5. <u>농어업고용인력 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u> 6. 그 밖에 여성·외 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u>실태를</u>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② ----- ----- -----. 1. ~ 4. (현행과 같 음) 5. <u>농어업고용인력 의 근무환경, 인 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u> 6. ----- ----- ----- <u>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 등 실태를</u>----- ----- -----	② ----- ----- -----. 1. ~ 5. (개정안과 같음) 6. ----- ----- ----- <u>실태를</u>----- ----- -----
③ · ④ (생략) <u><신설></u>	③ · ④ (현행과 같 음) <u>제7조의2(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위 원회) ① 외국인 계 절근로자의 고용관 리와 보호를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위
원회(이하 “배정심
사위원회”라 한다)
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본계획 중 외
국인 계절근로자
와 관련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
항

3.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
모 등에 관한 사
항

4. 외국인 계절근로
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
다)의 지정 및 지
정취소에 관한 사
항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
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
자의 취업활동 기
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리와 보호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정심사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로 하고 위원은 법
무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도지사

	<u>및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관계 기관</u> <u>의 장이 된다.</u> ④ <u>외국인 계절근</u> <u>로자 고용제도의</u> <u>운영 및 권익보호</u> <u>등에 관한 사항을</u> <u>사전에 심의하기</u> <u>위하여 배정심사위</u> <u>원회에 외국인 계</u> <u>절근로자 정책실무</u> <u>위원회(이하 “실무</u> <u>위원회”라 한다)를</u> <u>둔다.</u> ⑤ <u>배정심사위원회</u> <u>와 실무위원회의</u> <u>구성·기능 및 운</u> <u>영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제10조(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 어업경영체가 필요 로 하는 외국인 농 어업고용인력을 안	제10조(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 ----- ----- <u>농</u> 어업고용인력(외국	제10조(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 ----- ----- -----

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하 같 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③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 -----농어업고용인력-----정보 제공
<신 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4. -----농어업고용인력----- ----- ----- -----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내국인 구
인 노력)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하려는 농업경영가
구, 농업법인 및 조
합 또는 농어업경
영체(이하 “농어업
경영체등”이라 한
다)는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우
선 내국인 구인 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내국인 구
인 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
을 제시할 수 있도
록 상담·지원하여
야 하며, 구인 조건
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④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신 설>

수 있도록 직업소
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외국인 계
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송출국가의 노
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구직자 명
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
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삭 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
를 정하여 배정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
과 협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
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
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
직자 선발기준 등
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
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
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 추천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징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수료는 계절
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외국인 계

<삭 제>

절근로자 근로허가)

①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내국인 구
인 신청을 한 농어
업경영체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외국인 계절근
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로 하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
여 근로허가 신청
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
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농어업경영체등
에게 제10조의3제1
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
람 중에서 적격자
를 추천하여야 한
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3항
에 따라 추천된 적
격자를 선정한 농
어업경영체등에게
는 지체 없이 근로
허가를 하고, 선정
된 외국인 계절근
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허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0조의5(근로계약)

<삭 제>

① 농어업경영체등이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등
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 이를 시
· 군 · 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③ 제10조의4에 따
라 근로허가를 받
은 농어업경영체등
과 외국인 계절근
로자는 당사자 간
의 합의에 따라 근
로계약을 체결하거
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0조의7에 따
라 재입국추천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
는 외국인 계절근
로자와 농어업경영
체등은 연장된 취
업활동 기간의 범
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u>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절차 및 효력발 생 시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u><신 설></u>	<u>제10조의6(계절근로기 간 연장) 제10조의5 제3항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외국인 계 절근로자는 체류기 간 및 취업활동기 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u>	<u><삭 제></u>
<u><신 설></u>	<u>제10조의7(재입국추 천)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외 국인 계절근로자로 서 제10조의6에 따 라 연장된 취업활 동 기간이 끝나 출 국하기 전에 농어 업경영체등이 재입</u>	<u><삭 제></u>

국 후의 근로허가
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
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
업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근로
허가 신청과 재입
국 취업활동에 대
하여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 절
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외국
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

<삭 제>

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
용하는 외국인 계
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② 외국인 계절근
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
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
로자를 고용한 농
어업경영체등은 제
1항 및 제2항에 따
른 보험료 또는 신
탁금을 매월 납부
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는 농어업경영체등
의 보험료를 대통

<신 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방
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제3항에 따
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0조의9(근무처 변
경) 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다
른 사업 또는 사업

<삭 제>

장으로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휴업, 폐업, 사용
자 등의 고용허
가의 취소

2. 농어업경영체등
의 근로조건 위
반, 체불임금발생
또는 인권침해

3.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이 인
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제10조의
3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0(귀국에 필
요한 조치) 농어업
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

<삭 제>

<신 설>

관계의 종료, 체류
기간의 만료 등으
로 귀국하는 경우
에는 귀국하기 전
에 임금 등 금품관
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0조의11(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
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업장을 공공
형 외국인 계절근
로 사업장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의 지정) ① -----

-----운영 주
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
형 외국인 계절근
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
로 운영기관”이라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한다)-----.

② -----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의 준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	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u><삭 제></u>
--	---	--

한다.

<신 설>

제 14 조 의 2 (외 국 인
계절근로자의 보
호) ① 외국인 계
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농어업경
영체등”이라 한다)
은 외국인 계절근
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어업경영체등
이 외국인 계절근
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③ 농어업경영체등

은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 이를 시
·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④ 외국인 계절근
로자를 고용한 농
어업경영체등은 다
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
비하여 보증보
험. 다만, 「임금
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은 가입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
전재해예방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
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그 일부
를 관련-----

 -----.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

<u>에 해당하는 자는</u> <u>1년 이하의 징역</u> <u>또는 1천만원 이하</u> <u>의 벌금에 처한다.</u>	<u>반하여 귀국에 필</u> <u>요한 조치를 하지</u> <u>아니한</u> ----- ----- ----- -----.
1. <u>제10조의4제6항</u> <u>을 위반하여 외</u> <u>국인근로자의 선</u> <u>발, 알선, 그 밖</u> <u>의 채용 및 근로</u> <u>조건 조정에 개</u> <u>입한 자</u>	<u><삭 제></u>
2. <u>제10조의10을 위</u> <u>반하여 귀국에</u> <u>필요한 조치를</u> <u>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②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자는 500만원</u> <u>이하의 벌금에 처</u> <u>한다.</u>	② <u>제14조의2제4</u> <u>항 및 제5항에 따</u> <u>른 보증보험, 농어</u> <u>업인안전보험 또는</u> <u>상해보험에 가입하</u> <u>지 아니한</u> ----- ----- -----.
1. <u>제10조의8에 따</u>	<u><삭 제></u>

	<u>른 보증보험이나</u> <u>상해보험 또는</u> <u>농어업인안전보</u> <u>험에 가입하지</u> <u>아니한 자</u> 2. 제10조의9에 따 <u>른 외국인 계절</u> <u>근로자의 근무처</u> <u>변경을 방해한</u> <u>자</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1</u> <u>년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삭 제>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u>제2조(보증보험의 가</u> <u>입에 관한 적용례)</u> <u>제14조의2제4항의</u> <u>개정규정에 따른</u> <u>보증보험 가입 의</u> <u>무는 이 법 시행</u> <u>이후 외국인 계절</u> <u>근로자와 근로계약</u> <u>을 체결하는 경우</u> <u>부터 적용한다.</u>
--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근무환경”을 “근무환경, 인권보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어업고용인력”을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로 한다.

제7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농어업고용인력의 <u>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u> 에 관한 사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u> -----

항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어업고용인력의 <u>근무환경</u>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 <u>근무환경</u> , <u>인권보호</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u>농어업고용인력</u> 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 ----- <u>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u>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u>

<신 설>

3. (생 략)

④ (생 략)

<신 설>

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인신
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
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
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 설>

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

<신 설>

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
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